

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이번 2월 말까지 연말정산 하세요!

- 중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있으면 한국에서 머물러 있던 기간이 짧거나 지급받은 소득이 적어도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018년 2월 28일까지 정확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.
-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(www.hometax.go.kr→조회/발급→연말정산 간소화)를 통해 「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」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산파일로 내려 받아 「소득·세액공제 신고서」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
1

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

- 중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방법은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합니다.
- 다만,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,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세액공제 중 월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
- 중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공제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하고 특별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,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중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5년간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한 연간근로소득의 19%를 세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

1단계 총급여액	<u>연간근로소득</u> <u>(-)비과세소득</u> = 총급여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가운전보조비 비과세 학자금, 근로장학금 국외근로소득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(월 10만 원) 등 																					
2단계 근로소득금액	<u>총급여액</u> <u>(-)근로소득공제</u> = 근로소득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소득공제금액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53 594 1341 847"> <thead> <tr> <th>총급여액</th><th>근로소득공제금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0만 원 이하</td><td>총급여액 × 70%</td></tr> <tr> <td>500만 원 초과 1,500만 원 이하</td><td>350만 원 + (500만 원 초과금액 × 40%)</td></tr> <tr> <td>1,500만 원 초과 4,500만 원 이하</td><td>750만 원 + (1,500만 원 초과금액 × 15%)</td></tr> <tr> <td>4,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</td><td>1,200만 원 + (4,500만 원 초과금액 × 5%)</td></tr> <tr> <td>1억 원 초과</td><td>1,475만 원 + (1억 원 초과금액 × 2%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총급여액	근로소득공제금액	500만 원 이하	총급여액 × 70%	500만 원 초과 1,500만 원 이하	350만 원 + (500만 원 초과금액 × 40%)	1,500만 원 초과 4,500만 원 이하	750만 원 + (1,500만 원 초과금액 × 15%)	4,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	1,200만 원 + (4,500만 원 초과금액 × 5%)	1억 원 초과	1,475만 원 + (1억 원 초과금액 × 2%)									
총급여액	근로소득공제금액																						
500만 원 이하	총급여액 × 70%																						
500만 원 초과 1,500만 원 이하	350만 원 + (500만 원 초과금액 × 40%)																						
1,500만 원 초과 4,500만 원 이하	750만 원 + (1,500만 원 초과금액 × 15%)																						
4,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	1,200만 원 + (4,500만 원 초과금액 × 5%)																						
1억 원 초과	1,475만 원 + (1억 원 초과금액 × 2%)																						
3단계 과세표준	<u>근로소득금액</u> <u>(-)각종 소득공제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소득공제 <u>(+)소득공제</u> <u>종합한도 초과액</u> = 과세표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적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본공제 ·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53 1042 1341 1341"> <thead> <tr> <th>특별소득공제</th><th>그 밖의 소득공제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보험료</td><td>①개인연금저축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④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식감액</td></tr> <tr> <td></td><td>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,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	특별소득공제	그 밖의 소득공제	①보험료	①개인연금저축		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		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	④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		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		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식감액		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				
특별소득공제	그 밖의 소득공제																						
①보험료	①개인연금저축																						
	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																						
	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																					
	④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																						
	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																						
	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식감액																						
	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																					
4단계 산출세액	<u>과세표준</u> <u>(×) 세율</u> = 산출세액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53 1469 1341 1783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 구간</th><th>세율</th><th>산출세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 원 이하</td><td>6%</td><td>과세표준 × 6%</td></tr> <tr> <td>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</td><td>15%</td><td>72만 원 + (1,200만 원 초과금액 × 15%)</td></tr> <tr> <td>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이하</td><td>24%</td><td>582만 원 + (4,600만 원 초과금액 × 24%)</td></tr> <tr> <td>8,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</td><td>35%</td><td>1,590만 원 + (8,800만 원 초과금액 × 35%)</td></tr> <tr> <td>1억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</td><td>38%</td><td>3,760만 원 + (1억5천만 원 초과금액 × 38%)</td></tr> <tr> <td>5억 원 초과</td><td>40%</td><td>17,060 만 원 + (5억 원 초과금액 × 40%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 구간	세율	산출세액	1,200만 원 이하	6%	과세표준 × 6%	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	15%	72만 원 + (1,200만 원 초과금액 × 15%)	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이하	24%	582만 원 + (4,600만 원 초과금액 × 24%)	8,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	35%	1,590만 원 + (8,800만 원 초과금액 × 35%)	1억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	38%	3,760만 원 + (1억5천만 원 초과금액 × 38%)	5억 원 초과	40%	17,060 만 원 + (5억 원 초과금액 × 40%)
과세표준 구간	세율	산출세액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 원 이하	6%	과세표준 × 6%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 원 초과 4,600만 원 이하	15%	72만 원 + (1,200만 원 초과금액 × 15%)																					
4,600만 원 초과 8,800만 원 이하	24%	582만 원 + (4,600만 원 초과금액 × 24%)																					
8,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	35%	1,590만 원 + (8,800만 원 초과금액 × 35%)																					
1억5천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	38%	3,760만 원 + (1억5천만 원 초과금액 × 38%)																					
5억 원 초과	40%	17,060 만 원 + (5억 원 초과금액 × 40%)																					
5단계 결정세액	<u>산출세액</u> <u>(-)세액공제</u> = 결정세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소득 · 자녀 · 연금계좌 · 특별세액공제 · 납세조합공제 등 																					
6단계 납부(환급)할 세액	<u>결정세액</u> <u>(-)기납부세액</u> = 납부(환급)할세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납부세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월 (간이세액표 또는 19%단일세율)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																					

2. 연간근로소득의 19%를 적용한 연말정산 방법

1단계 연간근로소득	<u>비과세소득 포함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과세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가운전보조비(월 20만 원) - 업무관련 학자금 - 국민건강보험료 ·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-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(월 10만 원) 등
2단계 결정세액 [=산출세액]	<u>연간근로소득</u> <u>(×) 19%</u> = 결정 세액	
3단계 납부(환급)할 세액	<u>결정 세액</u> <u>(-)기납부세액</u> = 납부(환급)할 세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납부세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매월 (간이세액표 또는 19%단일세율)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

◎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과 19% 단일세율 방법의 적용 사례 비교

< 기본사항 >

- James는 2017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.
- 연간 근로소득 ₩200,000,000 - 비과세 소득 ₩5,000,000
- 가족사항: 본인(James, 만 36세), 부인(Jane, 만 38세)
(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₩1,000,000이 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.)
- 지출내역
 - 국민연금 ₩2,500,000 - 국민건강보험료 ₩1,500,000
 - 기납부세액 ₩44,334,000

연말정산 방법	19% 단일세율 방법
연간근로소득 ₩200,000,000	연간근로소득 ₩200,000,000
비과세근로소득 <u>(-) 5,000,000</u>	
총급여액 ₩195,000,000	
근로소득공제 16,650,000	
근로소득금액 ₩ 178,350,000	
인적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공제 3,000,000 연금보험료공제 2,500,000 	
특별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건강보험료 1,500,000 	
그밖의 소득공제	
과세표준 ₩ 171,350,000	
산출세액(기본세율) ₩ 45,713,000	
근로소득세액공제 <u>500,000</u>	
결정세액 ₩ 45,213,000	결정세액 ₩ 38,000,000
기납부세액 <u>(-) 44,334,000</u>	<u>(-) 44,334,000</u>
차감징수세액 ₩ 879,000	차감징수세액 ₩ △6,334,000

항목	구 분	공제 한도	공제 요건					
인적 공제	기본공제	1명당 150만 원	근로자 본인,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(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					
	추가공제	대상별 상이	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					
연금 보험료	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	전액	요건	경로우대 (70세 이상)	장애인	부녀자 (부양/기혼)	한부모	
			공제 금액	100만 원	200만 원	50만 원	100만 원	
특별 소득 공제	국민건강·고용 보험료	전액	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					
그 밖의 소득 공제	개인연금저축	연 72만 원 한도	개인연금저축('00.12.31 이전 가입) 납입액의 40% 공제					
	신용카드	Mn [300만 원 총급여 20%, 300만 원, 200만 원 [+100만 원 (전통시장, 대중교통)]	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(30%)*를 소득공제 * 신용카드(전통시장사용·대중교통이용금액 제외): 15% * 현금영수증, 직불카드, 선불카드(전통시장사용·대중교통이용금액 제외): 30% * 전통시장사용·대중교통이용금액: 40%					
	소기업·소상공인공제	연 300만 원 한도 (500만 원, 200만 원)	소기업·소상공인공제(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)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					
	우리사주조합 출연금	연 400만 원 한도	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					
	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	연 1,000만 원 한도	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%					
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연 240만 원 한도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('15.12.31 이전 가입) 납입액의 40% 공제					

2017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

항목	세액공제율 (대상금액 한도)	공제 요건									
근로소득 세액공제	55%, 30% (74만 원, 66만 원, 50만 원)	-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: 산출세액의 55% -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 : 71만5천 원 + 130만 원 초과금액의 30%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총 급여 액</td><td>세액공제 금액 한도</td></tr> <tr> <td>· 3천300만 원 이하</td><td>74만 원</td></tr> <tr> <td>· 3천300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</td><td>74만 원 - [(총급여액 - 3천300만 원) × 0.008] 다만,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</td></tr> <tr> <td>· 7천만 원 초과</td><td>66만 원 - [(총급여액 - 7천만 원) × 1/2] 다만,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</td></tr> </table>		총 급여 액	세액공제 금액 한도	· 3천300만 원 이하	74만 원	· 3천300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	74만 원 - [(총급여액 - 3천300만 원) × 0.008] 다만,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	· 7천만 원 초과	66만 원 - [(총급여액 - 7천만 원) × 1/2] 다만,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
총 급여 액	세액공제 금액 한도										
· 3천300만 원 이하	74만 원										
· 3천300만 원 초과 ~ 7천만 원 이하	74만 원 - [(총급여액 - 3천300만 원) × 0.008] 다만, 위 금액이 66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 원										
· 7천만 원 초과	66만 원 - [(총급여액 - 7천만 원) × 1/2] 다만, 위 금액이 5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 원										
연금계좌 세액공제	12%, 15% (700만 원)	퇴직연금·연금저축 납입액									
자녀 세액공제	-	-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 15만 원, 2명 30만 원,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- 6세이하 자녀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, 출생·입양 1명당 30만 원(50만 원, 70만 원)									
특별세액공제	보장성	12%(100만 원)	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								
	장애인 전용보장성	15%(100만 원)	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								
	의료비 ① 본인 등 (난임시술비)	15%(20%) (전액)	총급여액 3%를 초과하는 의료비 (부양가족의 나이·소득 제한 없음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① < 총급여액 3%</td> <td>① ≥ 총급여액 3%</td> </tr> <tr> <td>공제대상금액</td> <td>① - (총급여액 3% - ①) ① + Mn[(① - 총급여액 3%), 700만 원]</td> </tr> </table>	① < 총급여액 3%	① ≥ 총급여액 3%	공제대상금액	① - (총급여액 3% - ①) ① + Mn[(① - 총급여액 3%), 700만 원]				
① < 총급여액 3%	① ≥ 총급여액 3%										
공제대상금액	① - (총급여액 3% - ①) ① + Mn[(① - 총급여액 3%), 700만 원]										
② 부양가족 (난임시술비)	15%(20%) (700만 원)										
취학전 아동	15% (1명당 300만 원)	보육비용, 유치원비, 학원·체육시설 수강료									
교육비	초·중·고생	15% (1명당 300만 원)	나이제한 없음 (직계존속은 공제 제외) 교육비, 학교급식비, 교과서대, 방과후학교 수강료, 국외교육비(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), 교복구입비(중·고생에 한하여 50만 원 한도) 체험학습비(연 30만 원 한도)								
	대학생	15% (1명당 900만 원)	교육비(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), 국외교육비(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)								
	근로자 본인	15%(전액)	대학·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								
	장애인 특수교육비	15%(전액)	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*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								
	정치자금	15%, 25% (소득금액 100%)	10만 원까지는 100/110 세액공제								
기부금	법정	15%, 30% (소득금액 100%)	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15% 세액공제, 2천만 원 초과 30% 세액공제								
	우리사주 조합	15%, 30% (소득금액 30%)									
	지정(종교)	15%, 30% (소득금액 10%)									
	지정 (비종교)	15%, 30% (소득금액 30%)									
표준세액공제		13만 원	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								

구 분	소득공제 가능 여부		근거 또는 참고사항
	거주자	비거주자	
총급여	국외근로소득 포함	국내원천소득	소법§119[국내원천소득]. 7.
근로소득공제	○	○	
인적 공제	기본공제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)	○	본인만 가능 소법§122
	추가공제(경로우대, 장애인, 부녀자 등)	○	본인만 가능 소법§122
연금보험료 공제	○	○	
특별 소득 공제	국민건강·고용보험료	○	×
	주택 자금공제	×	×
그밖의 소득 공제	연금저축 등 공제	○	×
	소기업 · 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	○	×
	주택마련저축공제	×	×
	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	○	×
	신용카드소득공제	○	×
	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	○	×
	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○	×
	우리시주조합출연금공제	○	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
세액 공제 등	근로소득세액공제	○	○
	자녀세액공제	○	×
	특별세액공제(보험료· 의료비·교육비·기부금)	○	×
	월세액 세액공제	×	외국인은 '세대주'에 해당하지 않음
	납세조합세액공제	○	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
	외국납부세액공제	○	×
	표준세액공제	○	×

1

연말정산 대상 관련

1. 중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외에서 일하고 국외에서 지급 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, 그 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?

-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.
 - 다만,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.

2

소득공제 관련

2.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가능한지?

-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

3

세액공제 관련

3.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가능한지?

- 외국 의료기관은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

4.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출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?

-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(www.hometax.go.kr)⇒ 조회/발급 ⇒ 연말 정산간소화)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,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 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.

5.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?

- 국외소재 학원 등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시설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

6.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?

-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,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.
- 다만,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.

7.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?

-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